

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출입국 관련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·면·동에서, 거소신고사실증명은 시·군·구(자치구)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·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·면·동 및 자치구가 아닌 구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(국내거소신고), 제7조(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)를 개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6년 5월 29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
국무위원
법무부장관 김 현 응

● **법률 제14174호**
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1년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)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.

적용기간	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일까지	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 전일까지	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 전일까지
만기	6개월	5개월	4개월

제3조(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,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,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하되, 이 법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, 이 법 공포 후 3년부터 4년까지는 5개월로, 이 법 공포 후 4년부터 5년까지는 4개월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